

산재보험 적용 · 보상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

□ 중·소기업의 실질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

- (기존) 50인미만 중소기업 임의가입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명의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다른 경우, 명의 사업주만 가입 가능
- (개정) 실질 사업주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입 허용(가족관계 증명서, 운전조종면허 등 확인)

□ 일괄적용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

- (기존) 일괄적용 받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이므로 하수급인 사업주는 50인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임의가입 불가
- (개정)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도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

□ 해외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(vs 출장) 정비

- (기존) 일정 기준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 출장으로 해석
- (개정) 업무지시 주체 등에 따라 판단 → 국내사용자(출장) vs 파견(해외사용자)

□ 화물운송(지입)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마련

- (기존) 화물운송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간주, 임의가입 하지 않았으면 불승인
- (개정) 근로자성 판단 기준('18.8.13.)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로 산재 승인

□ 건설현장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명확화

- (기존) 임대계약 통해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가입자는 임대사업주로 판단
 - * 기계차 등으로 업무중 타사 근로자에게 산재 유발한 경우 임대사업주에 구상권 청구
- (개정) 건설현장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업자(일괄적용)

□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 하는 경우 적용방법 명확화('사업' 단위 원칙)

○ (기존) 사례별로 독립성 판단, '사업' 단위 통합 또는 '사업장' 별 분리적용*

※ ①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리, ② 사업장별 근로조건 결정권, ③ 인사노무, 회계 독립 등

○ (개정)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'사업' 단위 적용 원칙
→ 본사에서 가입신고 및 일괄적용 신청 되어있는 경우, 지사에서 별도 가입신고 없더라도 지사에 대한 미가입 재해 급여징수 미발생

□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 보상기준 확대

○ (기존)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공사 종료 또는 폐업·소멸 등으로 사업주 미상시에는 사업주 신원확인 완료시까지 보상 보류

○ (개정) 신속한 보상을 위해 先보상(보험료 미부과) → 後관리, 사후 사업주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 등 조치

□ 반도체·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 암 처리절차 개선

○ (기존) 재해조사(복지공단) → 역학조사(안전공단) → 판정위 → 결정

※ 역학조사 소요기간: ('16) 316일 → ('17년) 346일 → ('18.9월) 380일

○ (개정) 업무관련성 인정된 상병은 역학조사 생략(판정위에서 역학조사 판단)

※ 현재 8개 상병(백혈병·악성림프종·재생불량성빈혈·다발성경화증·뇌종양·유방암·난소암·폐암)

□ 특진을 통한 승인 전 치료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

○ (기존)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해 산재병원에 특진의뢰시 진단비용지급

○ (개정) 조기치료를 위해 뇌심혈관계질환,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승인 전 치료 인정기준 마련

※ 추정의 원칙 적용될 경우 업무상질병 여부 통보시까지의 치료를 특진비용으로 처리

□ 산재의료기관 통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

○ (기존) 요양 중인 산재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

○ (개정) 산재치료 위해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인정(18.12월 시행령 개정)

※ 거주지(근무처) ↔ 산재의료기관 통원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인정

□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재해(외상성 상병)의 업무처리 명확화

- (기존)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외상성 상병에 대해 처리절차 상이
※ 실신(질병) 결과에 따라 판단 VS “실신” 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처리 등
- (개정) “실신”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·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처리
* “실신” 등이 산재 불인정되어도 그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업무수행 사고로 인정

□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재해의 산재 인정 기준 확대

- (기존) 사업장 주변 환경의 급박한 변화로 긴급구조·피난 등의 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가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
- (개정)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*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

□ 돌봄서비스 종사자 산재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적용 기준 명확화

- (기존)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산재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불비
- (개정)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 →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고의·과실이 없거나 미성년자, 치매 등으로 합리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외
※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할 지능 있는 경우 가해자·법정 감독자 등에게 구상권 행사

□ 노조 전임자의 산재인정 기준 마련

- (기존) 노조 전임활동(행사중 사고 포함) 중 발생한 재해에 처리기준 상이(산재불인정 경향)
- (개정) 노조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, 노조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험 일반원칙(산재보험법 제37조)에 따라 판단